

【 7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2. 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금액을 규정함. (안 제5조 별표1 제13항목)
-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금액을 위반정도에 따라 10 - 100만원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별표1 제14항목)
- 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함 (안 제5조 별표1 제15항목)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중개정조례안

양주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1”중 부과항목란 제12호 다음에“제13내지 제15”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이상 10이하	5이상 10이하	5이상 1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5	5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30조 제4항)	100	100	100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24조 제3항 제41조)	30	50	100
	6.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100	100	100
	7.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30	50	100
	8.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 제1항)	30	50	100
	9.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100	100	100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	100	100
	1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3.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14.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 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 쓰레기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 한 경우	10	20	30
15.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 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100	200	3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썬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50	300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이썬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50	10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원의절 약및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 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 합목욕탕)	100 150	200 250	300 3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 업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 니엄업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50 100	250 200	300 300
	마. 도. 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 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 포(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을 위반한 때	150	250	300
	바.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 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50	250	300
	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00	200	300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	90	100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30	50	100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第39編 環 境 第 3 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5·8·4>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보관한 者
2. 내지 4. 削除 <95·8·4>
5. 第26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30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 6의2. 第30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
8. 第24條第 2 項·第25條第 4 項 또는 第44條의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및 10. 削除 <95·8·4>
11. 削除 <92·12·8>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4. 및 15. 削除 <95·8·4>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8·4>

1. 第24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 3 項 또는 第44條의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使用制限命令을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 또는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使用을 開始한 者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別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8·4>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 부터 30日 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8·4>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8·4>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8·4>

附 則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1994. 8. 25]
조례 제1508호]

개정 1997. 8. 11 조례 제164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 3 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4. 8.25 조례 제1508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부 칙 (1997. 8.11 조례 제164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 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 지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 기물을 버리는 행위	5이상 10이하	5이상 10이하	5이상 1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 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 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 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는 제외)	50이상 100미만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 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 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 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5	5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30조 제4항)	100	100	100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30	50	100
	6.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100	100	100
	7.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30	50	100
	8.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 제1항)	30	50	100
	9.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	100	100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150	250	300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대표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표(코팅)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50	1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	200	300
	(2) 특수목욕장업(샤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150	250	3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	250	300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 폐기물관리과 태료부과·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및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	200	300
	마.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대 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 타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 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 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 지로 도포(코팅)또는 칩합 (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 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50	250	300
	바.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 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00	250	3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50	250	300
	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 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 타,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 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전문 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	100	200	300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적용법 자원의절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약및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 업에서 도포(코팅) 또는 철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 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	90	100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30	50	100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
에서 산입한다.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시·군 통보용)

영 수 증
(개인통지용)

계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동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㉑		

계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㉑	

계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양주군수	귀하

계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3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 주 관 수 ㉠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 2, 3번의 밑줄친 부분은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계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양 주 군 수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무)

(시·군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날짜도장							
		양 주 군 수 귀하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계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m²)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m²)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관리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계 호			
수 신	발 신	양 주 군 수 ㉠	
<p>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p> <p>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p> <p>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 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 지 일 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 과 기 간	⑦ 이 의 제 기 일 자	
<p>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m²)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과태 료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